

2020년
1월부터

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

12월부터 신청하세요!

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추가 완화됩니다.
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!

중증장애인 수급권자

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(생계급여)

| 주요내용 |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* 다만,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
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

※ 그 외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,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적용

수급자 재산기준 완화(생계, 주거, 교육급여)

| 주요내용 |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
기본재산공제액*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**
현행화

구분	기본재산공제액*	주거용재산한도액**
대도시	'19 5400만원 → '20 6900만원	'19 1억원 → '20 1.2억원
중소도시	'19 3400만원 → '20 4200만원	'19 6800만원 → '20 9000만원
농어촌	'19 2900만원 → '20 3500만원	'19 3800만원 → '20 5200만원

근로연령층(25~64세) 근로소득공제 30% 적용 (생계, 주거, 교육급여)

| 주요내용 | 근로연령층(25세~64세) 수급권자의
근로·사업소득의 70%만 소득으로 반영
(30%는 공제)

* 현재 24세 이하, 65세 이상,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
근로소득공제 적용 중

부양비 부과율 인하 (생계급여)

| 주요내용 | 현재 아들·미혼의딸 30%, 결혼한딸 15%인
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10%로 완화

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?
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
거주하는 지역의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

※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'복지로' 홈페이지에서 확인



보건복지부